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7호 2012. 10. 22.(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741호(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742호(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74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안 제5조 ~ 제6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회의 (안 제8조 ~ 제9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및 회의록 작성(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11월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민원지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426, FAX 032-810-7429, www.yeons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

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7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 제척 및 기피(안 제5조 ~ 제6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안 제7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간사, 회의 (안 제8조 ~ 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1조)
-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및 회의록 작성(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11월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민원지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426, FAX 032-810-7429, www.yeons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전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